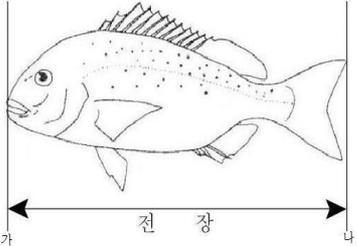


낚시인 포획물(어획물)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안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 어족자원보호를 위하여
낚시인 포획물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 과태료 80만원 (법적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 제55조제1항제3호)

□ 관내 주요 대표어종

어 종 별	어 종 사 진	금지체장	금 지 기 간
조피볼락 (우 렉)		23cm 이하	금지체장 측정방법 
볼 락		15cm 이하	
감 성 돔		20cm 이하	
돌 돔		24cm 이하	
넙치(광어)		21cm 이하	
민 어		33cm 이하	
농 어		30cm 이하	
붕 장 어		35cm 이하	
항 복		20cm 이하	
문치가자미 (도다리)		15cm	
쥐노래미		20cm 이하	11.1 ~ 12. 31 (단, 백령 및 대청해역은 11.15 ~ 12. 14)

“바다의 자원은 유한한 것이며, 후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조(목적)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선원포함)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4.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가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하는 미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치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해상에 분뇨, 폐기물, 유류 등의 각종쓰레기를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인명의 안전에 위한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타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낚시승객은 낚시 중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낚시승객은 안전을 위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선장은 승객이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3톤 미만 어선 의무착용)

제5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

- ① 낚시어선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확인증 및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갑판실 외벽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제6조(벌칙)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